##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11527 번 호 발의연월일: 2021. 7. 15.

발 의 자:신영대·김교흥·박찬대

최종윤・유정주・기동민

서삼석 · 전재수 · 고민정

김병기 · 윤준병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호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하고, 사설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 중 사고로 중학생이 사지가 마비되는 등 체육시설 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수영장은 안전관리요원이 주변 시설 정비 업무를 도맡아 하는 등 안전관리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영장업의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안전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며,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요원의 근무범위나 근무수칙을 정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안전관리요원 근무수칙을 현행법의 안전 위생 기준에 포함하

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법률 제 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안전·위생 기준)"을 "(안전·위생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근무수칙 준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 <u>(안전·위생 기준)</u> ① 체육	제24조 <u>(안전·위생 기준 등)</u> ① -
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	
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u>안전관리요원 배치</u> ,	<u>안전관리요원 배</u>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	치와 근무수칙 준수
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	
을 지켜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